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 관련 주요 정책

엑스포벤처자산운용(이하 "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정보교류차단 및 이해상충관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③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II.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관련 정보 중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⑥ 집합투자·투자일임(해당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관련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⑦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회사에서 지정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1.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 업무를 포함)

2. 각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① 회사 고유재산 운용업무 : 회사의 고유재산에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 ② 집합투자재산등의 운용업무 : 집합투자재산(일반·기관전용사모펀드 포함)및 투자일임 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문업무에 관한 정보,미공개중요정보
- ③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 상기 정보교류차단 부문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비밀 유지,부당정보 이용금지 및 선행매매 금지 의무 준수를 전제로 감사,인사,회계,재무, 경영지원,경영분석,상품개발,전산,결제,법무,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보교류를 허용

IV.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1. 거래주의 목록 및 지정기준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정보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발행인과 관련한 판매,거래,조사분석자료의 제공,사적 거래 가능

2. 거래제한 상품 목록 및 지정기준

미공개중요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운용부서 및 정보를 입수한 유관부서의 임직원, 회사 고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거래제한

- ① 특정발행인과 관련하여 널리 일반에 알려진 거래에 회사가 투자자문,매매·중개, 인수인,공동주관사등으로 참여한 경우
-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다만, 아래 사항은 사전에 정의되거나 알려진 이해상충의 유형의 예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그 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조치를 강구해야 함.

이해상충 우려 유형	해당 업무	이해상충 방지 수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투자	임직원의 국내상장주식등 사적 투자행위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및 사후 신고절차
재산상 편익 수령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 을 수령하는 행위	준법감시인 보고
의결권의 행사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한 주식 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대외활동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중개회사의 선정	집합투자재산 매매를 위한 투자중개·매매회사 선정	중개회사 선정기준 준수
운용지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에 자산배 분을 위한 주문	사전자산배분 확인
집합투자기기간 거래	집합투자기기간 자산거래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VI. 기티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내용

1. 이해상충의 관리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임직원은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어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의 이해상충 유형과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원칙은 다음과 같음.

2. 이해상충의 유형

- ① 회사와 임직원의 관계
- ② 회사와 고객과의 관계
- ③ 임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 ④ 특정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관계

3. 이해상충 유형의 문제해결 원칙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

2025.09.03 개정 (2021.05.20 제정)